

# 공 고

2023. 9. 1.자 내부형 및 초빙형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22일

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



## 1. 목적

- 가. 교장 임용 방법의 다양화로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책임 경영이 가능한 학교장 공모하여 교육자치 강화
- 나. 세계화·정보화,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 체제로 이행, 교육개혁 정책 등 급격한 학교 내외의 환경 변화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운영자로서 교장의 역할 요청

## 2. 교장 공모제 학교

공모유형	지원자격	학교급 (학교수)	학교명
초빙형	• 교장자격증 소지자	초등(1)	◦ 대흥초등학교
내부형	• 교장자격증 소지자	초등(1)	◦ 덕천초등학교

3. 임용 기간: 2023. 9. 1. ~ 2027. 8. 31.(4년 원칙, 임기 중 전직 및 파견 제한)

4. 공모 범위 :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(임용예정일 기준)

## 5. 지원 자격

- 가. 임용예정일(2023.9.1.자)을 기준으로 4년간 재임 가능한 자(다만,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최소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함)
- 나. 초빙형: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(임용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, 다만,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선정 취소)
- 다. 내부형: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(임용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, 다만,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선정 취소)

## 6. 지원 제한자

-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(임용예정일 기준)
-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
  -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
-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(승진 임용의 제한) 기간에 해당하는 자
  - ※ 전직도 승진임용의 제한 규정 적용
-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(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)의 제한 요건 해당자
-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현임교(기관)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교감·교사·교육전문직원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(교육공무원법 제21조)
-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. 다만, 교원 4대 비위자(금품향응수수, 성적 조작, 성폭행, 상습폭행) 및 그에 준하는 비위징계 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여부와 관계 없이 응시 불가
- 2022.1.1.이후 음주운전(음주측정에 대한 불응)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·처분을 받은 사람
- 초등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
- 현임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
  - 다만,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
-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공모 지원 불가
  - ※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4 제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중에 교(원)장, 교(원)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
- 특정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경우, 해당 학교 공모 지원 제한
-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은 관내 초·중학교 공모지원 불가(고등학교 지원 가능)
- 현임교 학교운영위원(교원위원 제외)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
  - (다만, 기 운영위원중 임용예정일 기준으로, 사임 후 2년 경과한 자는 지원 가능)

○ **현 재직교 지원은 원칙적 금지**

다만, 현임교 재직교사(혁신학교인 자율학교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함)의 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름. 승인결과는 추후 안내 예정 ※ 개방형 학교는 교육감이 승인

**7. 공모 공고 및 서류 접수**

가. 공모 및 접수 기간: 2023.5.22.(월)~5.25.(목)

- 1차 공모 후 지원자가 없거나, 1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
- 재공고 및 접수 기간: 2023.5.26.(금)~5.30.(화) 16:30까지

나. 접수처: 해당학교 접수처

학교명	접수처	주소
대흥초등학교	대흥초등학교 교무실	전북 정읍시 입암면 정읍남로 766
덕천초등학교	덕천초등학교 행정실	전북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로 831

다. 접수방법: 인편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(등기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-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(해당학교 접수처로 유선 확인)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공모교장 지원자는 2개교 지원 불가함

**8. 지원자 제출 서류**

- 교장공모 지원서 2부
-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(NEIS 출력)(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)
-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2부 → 원본 1부, 익명처리 1부
-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근거자료 2부 → 원본 1부, 익명처리 1부
- 자기소개서 2부. 저장매체에 제출(홈페이지 탑재용) → 원본 및 익명처리 각 1부

**※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기재 불가, 기재할 경우 심사 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점 조치 등 실시**

- 학교운영계획서 2부. 저장매체에 제출(홈페이지 탑재용) → 원본 및 익명처리 각 1부
- 자료 공개 동의서
- 사실확인서 및 서약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사본 각 2부(원본지참)\_개방형에 한함

-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(추후 요구할 수도 있음)
  - 교장, 교감, 교사 자격증 사본 각 2부(현 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)
  -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증명서(지원 학교급별 나이스 검색이 안 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)
  - 학교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 증빙서류(개방형)
- ※ 관련 서식은 '2023.9.1.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' 공문 [교원인사과-7972(2023.04.04)] 참조

## 9. 심사 및 지원자 유의사항

- 가. 심사 일시 및 단계별 심사 대상자 통보 - 추후 개별 통보
- 나. 지원자는 필요한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
- 다. 지원자는 품위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협조
- 라.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양과 공모교장 선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 유의
- 마. 심사·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 
(연루자에 대한 징계,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예정)
- 바. 공모교장으로 재직 한 사람이 2023.9.1.자 공모교장 지원 시, 이전 공모교장 지원할 때 제출한 본인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를 인용할 경우에도 출처표시가 없다면 연구부정행위의 '부당한 중복게재'에 해당되며, 출처표시가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면 지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
- 사. 연구부정행위(표절 등) 심사 범위 : 2010.9.1. 공모 이후 전국에서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자 및 2023. 9. 1.자 교장공모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
- 아. (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)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인사와의 관계를 기재 시,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점 등의 조치

## 10.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 탑재

- 가. 익명처리 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(다만, 학교운영계획서는 1차 심사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2차 심사일까지 공지)
- 나. 지원자의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는 전국단위 표절검증 시스템을 적용하여 도교육청 연구부정행위(표절 등)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, 연구부정행위(표절 등)로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자격 박탈, 임용 추천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

## 11. 심사 후 이의제기 신청기간 운영

- 가. 이의제기 신청기간: 2023.6.22.(목).~6.23.(금)
- 나. 이의신청 방법: 명확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방문 접수

## 12. 기타

- 가. 지원자는 '2023.9.1.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' 공문 [교원인사과-7972(2023.04.04)]을 숙지한 후 서류 작성
- 나. 서류검토 결과 기록내용이 과장이나 허위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원서류 작성 시 세심한 주의 요망
- 다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라.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'2023.9.1.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' 공문 [교원인사과-7972(2023.04.04.)]과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
- 마. 서류 작성 시 제출한 인사기록카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기록함
- 바.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한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교장공모 지정을 철회
- 사. 기타 사항 및 제출 서식 등은 해당학교 접수처에 문의 바람

